##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95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서천호·김선교·최보윤

정성국 · 김예지 · 서명옥

백종헌 • 박덕흠 • 이만희

조경태 · 서지영 · 진종오

김용태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기적으로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대해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

모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법률 제 호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지원 또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아과, 산부인과 등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13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을 "지정하거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정"을 "지정 또는 설립·운영"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4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			
(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u>지원</u> 을 할 수 있다.	<u>지원 또는 사업</u>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소아과, 산부인과 등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의 <u>지정</u> ) ① 시·도지사는 관	의 <u>지정 등</u> ) ①		
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			
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			
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			
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			

다	)은	ス	정호	할 수	Ó]	다
4	ノー		ĺÖ ₹	<u>i</u> [	入入	ч.

- ② ~ ⑤ (생 략)
- ⑥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하거니	ナ 의료취약>	지 거점의
료기관을	설립 • 운영-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지정 또는 설립·운영-----